

국토 교통성 고시 제 1593 호

여행업법 (1952 년 법률 제 239 호) 제 12 조의 3 의 표준 여행업 약관(1995 년 12 월 19 일 운수성 고시 제 790 호)의 전부를 개정해 다음과 같이 정했으므로 공시한다.

2004 년 12 월 16 일

국토교통 대신 기타가와 카즈오

표준 여행업 약관

【원문은 중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

제 1 장 총칙

(적용 범위)

제 1 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에 관한 계약 (이하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이라고 말합니다.)은 이 약관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동시에 여행자의 불리가 안되는 범위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맺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 2 조 이 약관으로 「모집형 기획 여행」 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모집을 위해서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의 서비스의 내용 또는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여행 대금의 금액을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것에 의해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은 일본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부에서 「통신 계약」 이란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을 당사를 대리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 (이하 「제휴회사」 라고 말합니다.)의 카드 회원과의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스 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이며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소유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달리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동시에 당해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여행 대금등을 제 12 조 제 2 항, 제 16 조 1 항 후단, 제 19 조 제 2 항에 따라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말합니다.

4 이 부에서 「전자승낙 통지」 란 계약의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이며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의 중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을 당사를 대리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전화기 (이하 「전자 계산기등」 이라고 합니다.) 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등을 접속되는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서 송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합니다.

5 이 약관에서 「카드 이용일」 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에 따른 여행 대금등의 지불 또는 환불 채무를 이행해야 할 날을 말합니다.

(여행 계약의 내용)

제 3 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에 있어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서 운송.숙박 기관등을 제공하는 운송.숙박 기타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 (이하 「여행 서비스」 라고

말합니다.) 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여정의 관리를 맡습니다.

(수배 대행자)

제 4 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이행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또는 국내의외의 다른 여행업자 또는 수배를 직업으로 행하는 자 기타의 보조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신청)(제 3 종 여행업자가 아닐 경우)

제 5 조 당사에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정해진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고 합니다.)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 한 후 당사가 별도로 정한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당사에 통신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의 명칭, 여행 개시일, 회원번호 기타의 사항(이하 다음조에 있어서 「회원번호등」이라고 말합니다.)을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제 1 항의 신청금은 여행 대금 또는 취소료 또는 조약 위반료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4 모집형 기획 여행의 참가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의 신청시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 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대처합니다.

5 전항의 제안에 기인하여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서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계약의 신청)(제 3 종 여행업자일 경우)

제 5 조 당사에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고 합니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위 여행 대금의 20%이내로 당사가 따로 정하고 있는 금액의 신청액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당사에 통신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의 명칭, 여행 개시일, 회원번호 기타의 사항(이하 다음조에 있어서 「회원번호등」이라고 말합니다.)을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제 1 항의 신청금은 여행 대금 또는 취소료 혹은 조약위반료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4 모집형 기획 여행의 참가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는 여행자는 계약신청 때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 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응하겠습니다.

5 전항의 제안에 근거해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서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하는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전화등에 의한 예약)

제 6 조 당사는 전화, 우편, 팩스 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의 시점에서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고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의 승낙의 취지를 통지한 후 당사가 정한 기간내에 전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 또는 회원번호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전항의 결정된 것에 의해 신청서와 신청금의 제출이 있었을 때 또는 회원번호등의 통지가 있었을 때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의 순위는 당해예약의 접수의 순위에 따릅니다.

3 여행자가 제 1 항의 기간내에 신청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회원번호등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는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다룹니다.

(계약 체결의 거부)

제 7 조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 ①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의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채우지 않고 있을 때.
- ② 응모 여행자수가 모집 예정수를 넘었을 때.
- ③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고 또는 단체행동이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우려가 있을 때
- ④ 당사 업무상의 사정이 있을 때
- ⑤ 통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여행자가 소유하는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할 수 없을 때.

(계약의 성립 시기)

제 8 조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 5 조 제 1 항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통신 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급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해계약에 있어서 전자승낙 통지를 보낼 경우는 당해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 9 조 당사는 전조가 정하는 계약 성립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 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계약서면」이라고 말합니다.) 을 교부합니다.

2 당사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에 의해 수배한 여정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것에 따릅니다.

(확정 서면)

제 10 조 전조 제 1 항의 계약서면에 있어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 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계약서면에 이용 예정의 숙박 기관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 기관의 명칭을 한정해서 열거한 뒤에 당해계약서면 교부후 여행 시작 전날 (여행 시작 전날부터 기산해서 7 일이 되는 날이후에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신청이 행해졌을 경우에 있어서는 여행 시작 일) 까지의 당해계약서면에 정하는 날까지 이것들의 확정상황을 기재한 서면 (이하 「확정 서면」이라고 말합니다.) 을 교부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배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에게서 문의가 있었을 때는 확정 서면의 교부전이어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회답합니다.

3 제 1 항의 확정 서면을 교부했을 경우에는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준비한 여정을 관리하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당해확정 서면에 기재하는 것에 특정됩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 11 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고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 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 서면의 교부를 대신해서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당해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기재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의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준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의 사용에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파일 (다만 당해여행자의 용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여행 대금) (제 3 종 여행업자가 아닐 경우)

제 12조 여행자는 여행 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기일까지 당사에 계약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금액의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고 있는 금액의 여행 대금의 지불을 받습니다. 또 카드 이용일은 여행 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여행 대금) (제 3 종 여행업자일 경우)

제 12조 여행자는 여행 개시일 이후로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당사는 여행개시일전에는 신청금을 제외하고 여행 대금을 받는것은 일체 실시하지 않습니다.

2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의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 대금의 지불을 받습니다. 또 카드 이용일은 신청금에 대해서는 여행 계약 성립일로 하고 신청금을 제외하는 여행 대금에 대해서는 여행 개시일 이후에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날로 합니다.

제 3 장 계약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제 13조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기타의 당사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하게 당해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이유 및 당해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기타의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내용 (이하 「계약 내용」이라고 합니다.) 을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긴급시의 부득이한 경우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 대금의 금액의 변경)

제 14 조 모집형 기획 여행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이용하는 운송 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운임.요금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적용 운임.요금」이라고 말합니다.)이 현저한 경제 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모집형 기획 여행의 모집시에 명시한 시점의 내용을 유효한 것으로서 하고 공시되어 있는 적용 운임.요금에 비교해 보통 상정되는 정도를 대폭 넘어 증액 또는 감액될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여행 대금의 액수를 늘리고 또는 줄일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전항이 결정한 것에 의해 여행 대금을 증액됐을 때는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15일째 되는 날보다 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3 당사는 제 1 항에 결정된 적용 운임.요금의 감액이 행해질 때는 동항의 결정한 것에 의해 그 감소액수만 여행 대금을 감액합니다.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해 여행실시에 요하는 비용(당해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조약 위반료 기타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의 감소 또는 증가가 생길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 기관등이 당해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등의 좌석, 방기타의 여러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당해계약 내용의 변경시에 그 범위내에서 여행 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5 당사는 운송.숙박 기관등의 이용 인원에 의해 여행 대금이 다른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했을

경우에 있어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성립후에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르지 않고 당해이용 인원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의해 여행 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대)

- 제 15 조** 당사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 2 여행자는 전항에 정한 당사의 승낙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의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 제 1 항의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 효력을 생기는 것으로 하고 이후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 3 자는 여행자의 당해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에 관한 일절의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 제 16 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 1 에 정해진 취소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있어서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의 지불을 받습니다.
- 2 여행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여행 개시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당사에 의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단 그 변경이 별표 제 2 상란에 열거한 것 기타의 중요한 경우일 때에 한합니다.
 - ②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서 여행 대금이 증액되었을 때.
 - ③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여행의 안전 또는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는 불가능이 될 우려가 지극히 클 때.
 - ④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기일까지 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 ⑤ 당사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에 의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이 되었을 때.
- 3 여행자는 여행 시작후에 당해여행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의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졌을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렸을 때는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 서비스의 당해수령할 수 없어진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 대금 중 여행 서비스의 당해수령할 수 없어진 부분에 관련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금액으로부터 당해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조약위반료 기타의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등 - 여행 개시전의 해제)

- 제 17 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 시작 전에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 ① 여행자가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의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졌을 때.
 - ② 여행자가 병 그리고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에 의해 당해여행에 견딜 수 없다고

판단 됐을 때

③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고 또는 단체여행이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됐을 때

④여행자가 계약 내용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추구했을 때.

⑤여행자의 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 개최인원에 차지 않았을 때.

⑥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필요한 강설량등의 여행 실시 조건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시에 명시한 내용이 성취하지 되지 않을 우려가 지극히 클 때.

⑦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당사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고 또는 불가능이 될 우려가 극히 클 때.

⑧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소유하는 크레디트 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등에 영향을 미치는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에 따라서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여행자가 제 12 조 제 1 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당해기일의 다음날에 있어서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 제 1 항에 정한 취소료에 상당한 금액인 조약위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당사는 제 1 항 제 5 호에 열거한 사유에 의해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여행 개시

날 전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13 일째(당일여행에 대해서는 3 일째 되는 날보다 전에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23 일째(별표 제 1 에 규정하는 성황기 때에 여행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33 일째)되는 날보다 전에 여행을 중지할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여행개시후의 해제)

제 18 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 여행 시작후이어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①여행자가 병 그리고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에 의해 여행의 계속해서 견딜 수 없을 때.

②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여행사 안내원 기타 관련인에 의한 당사의 지시에의 위배,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게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한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당해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때

③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기타의 당사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당사와 여행자와의 사이의 계약 관계는 앞으로 생기는 내용만이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이미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행해진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 대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고 있는 여행 서비스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금액으로부터 당해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조약위반료 기타의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에 관련되는 금액을 뺀 것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여행 대금의 환불)

제 19 조 당사는 제 14 조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여행 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 조의 규정에 의해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 대하여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여행 개시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해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 일 이내에 하고 감액 또는 여행 개시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 일 이내에 여행자에 대하여 당해금액을 환불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있어서 제 14 조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여행 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 조의 규정에 의해 통신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 대하여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여행자에 대하여 당해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 시작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해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 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 일 이내에 여행자에 대하여 환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여행자에게 당해통지를 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3 전 2 항의 규정은 제 27 조 또는 제 30 조 제 1 항에 규정한 것에 의해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해제후의 귀로 준비)

제 20조 당사는 제 18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의해 여행 시작후에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당해여행의 출발지에 되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여행 서비스의 수배를 맡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출발지에 되돌아오기 위한 여행에 필요로 하는 일절의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5 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제 21 조 당사는 같은 행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 (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를 정해서 신청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 책임자)

제 22 조 당사는 특약을 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 (이하 「구성자」라고 말합니다.)의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절의 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단체·그룹에 관계되는 여행 업무에 관한 거래는 당해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실시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한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 책임지고 또는 앞으로 책임질 것이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후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제 6 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제 23 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는 것에 노력하고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이행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것과 다른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① 여행자가 여행중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받을 때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② 전항의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대체 서비스의 준비를 행할 것. 그 때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후의 여행일정이 당초의 여행 일정의 취지에 가깝게 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 또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후의 여행 서비스가 당초의 여행 서비스와 같은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 24 조 여행자는 여행 시작후 여행 종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단체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당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행사 안내원등의 업무)

제 25 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의해 여행사 안내원 기타 관련인을 동행시켜서 제 23 조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기타 당해모집형 기획 여행에 부수되어 당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여행사 안내원 기타 관련인이 동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으로서 8 시부터 20 시까지로 합니다.

(보호 조치)

제 26 조 당사는 여행중의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에 의해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당사의 책임으로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때는 당해조치에 필요로 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여행자는 당해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의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7 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 27 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이행시 당사 또는 당사가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준비를 대행시킨 자 (이하 「준비 대행자」라고 말합니다.)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2 년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 대행자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화물에 대해서 생긴 제 1 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14 일이내에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21 일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해 여행자 한 명에 대해서 15 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로 배상합니다.

(특별 보상)

제 28 조 당사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당사의 책임의 여부를 막론하고 별지 특별보상 규정에 정한 것으로 의해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화물에 피해를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 미리 결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문금을 지불합니다.

2 전항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가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에 따라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의 금액의 한도에 있어서 당사가 지불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당해손해 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당사의 보상금 지불 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전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 배상금과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합니다.)에 상당하는 액만 절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모집형 기획 여행 참가중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의 여행 대금을 받아서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내용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여정보증)

제 29 조 당사는 별표에 제 2 상란에 열거한 계약 내용이 중요한 변경(다음의 각호에 열거한 변경(운송·숙박 기관등이 당해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등의 좌석, 방기타의 제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를 제외합니다.) 이 생겼을 경우는 여행 대금에 동표 하란에 기재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 마지막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 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단 당해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①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한 변경

- a 천재지변
- b 전란
- c 폭동
- d 관공서의 명령
- e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 f 당초의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 g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 때문에 필요한 조치

② 제 16 조로부터 제 18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당해해제된 부분에 관련되는 변경

2 당사가 지불해야 할 변경배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한명에 대하여 한 모집형 기획 여행에 대해서 여행 대금에 15%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 여행자 한명에 대하여 한 모집형 기획 여행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변경 보상금의 액수가 1000 엔 미만일 때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해 변경보상금을 지불한 후에 당해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 2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해변경에 관계 되는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근거해 당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액을 상쇄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 30 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의무 기타의 모집형 기획여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여행자는 여행 시작후에 있어서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때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당해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8 장 영업 보증금 (여행업 협회의 보증 사원이 아닐 경우)

(영업 보증금)

제 31조 당사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생긴 채권에 관해서는 당사가 여행업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탁하고 있는 영업 보증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 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명칭
- ② 소재지

제 8 장 변제 업무보증금(여행업 협회의 보증 사원일 경우)

(변제 업무보증금)

제 31조 당사는 사단법인 여행업협회(동경도 구 정 정목 번 호)의 보증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2 당사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생긴 채권에 관해서는 전항의 사단 법인여행업 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 업무보증금으로부터 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 22 조의 10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사단 법인 여행업 협회에 변제 업무보증금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 7 조 제 1 항에 근거하는 영업 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표 제 1 취소료 (제 16 조 제 1 항 관계)

① 국내 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소료
①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a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20 일째(당일여행에 있어서는 10 일째)에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b 부터 e 까지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20%이내
b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7 일째에 되는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부터 e 까지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30%이내
c 여행 개시일의 전날에 해제할 경우	여행대금의 40%이내
d 여행 개시 당일에 해제할 경우(e 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50%이내
e 여행 개시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이내
②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당해선박에 관계되는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해외 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소료
① 일본 출국시 또는 귀국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다음 항에 열거하는 여행 계약을 제외한다.)	
a 여행 개시일이 피크시의 여행일 경우에 여행 시작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40 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때(b 부터 d 때 까지 열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10%이내
b 여행 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해서 30 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및 d 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20%이내
c 여행 개시일의 전전날이후에 해제할 경우(d 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50%이내
d 여행 개시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 대금의 100%이내
②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a 여행 개시일전날부터 기산해서 90 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b 부터 d 까지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20%이내
b 여행 개시일전날부터 기산해서 30 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및 d 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50%이내
c 여행 개시일의전날부터 기산해서 20 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d 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 대금의 80%이내
d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기산해서 3 일째 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 대금의 100%이내
③ 일본출국시 및 귀국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당해선박에 관계되는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주의 「피크 때」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또는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별표 제 2 변경 보상금(제 29 조 제 1 항관계)

변경보상금의 지불이 필요로 되는 변경	한 사건당의 비율(%)	
	여행 시작전	여행시작후

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시작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②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그 밖의 여행의 목적지의 변경	1.0	2.0
③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 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의 내용으로 변경(변경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의 합계액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미비한 경우에만 한함다.)	1.0	2.0
④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 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 이름의 변경	1.0	2.0
⑤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내의 여행개시지에서의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의 공항이 다른 편으로 변경	1.0	2.0
⑥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내와 일본외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직접편의 승계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	1.0	2.0
⑦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 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⑧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 기관의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기타의 객실의 조건의 변경	1.0	2.0
⑨ 앞 각호에 열거한 변경한 것 중 계약서면의 투어·타이틀중에 기재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2.5	5.0

주 ① 「여행 시작전」이란 당해변경에 대해서 여행 시작일의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하고, 「여행 시작후」이란 당해변경에 대해서 여행 시작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 ② 확정 서면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 서면」이라고 다른 음으로 읽은 뒤에서 이 겹면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이라고 확정 서면의 기재 내용과의 사이 또는 확정 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과의 사이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한 건으로서 취급합니다.

주 ③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열거하는 변경에 관련되는 운송 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과 수반할 경우는 일박에 대해서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④ 제 4 호에 내세우는 운송 기관의 회사 이름의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높은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⑤ 제 4 호 또는 제 7 호 또는 제 8 호에 열거하는 변경이 일승 차, 배등 또는 일박 안에서 복수 생겼을 경우이어도 일승차, 배등 또는 일박에 대해서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⑥ 제 9 호에 열거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제 1 호로부터 제 8 호까지 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 9 호에 따릅니다.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

제 1 장 총칙

(적용 범위)

제 1 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수주형 기획 여행에 관한 계약 (이하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은 이 약관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 되지 않고 여행자의 불리가 안되는 범위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이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 2 조 이 약관에서 「수주형 기획 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의뢰에 의해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서비스의 내용 또는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여행 대금을 정해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서 이것에 의해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으로 「국내여행」이란 일본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부에서 「통신 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 (이하 「제휴회사」라고 말합니다.) 의 카드 회원과의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스 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서 체결하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이며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소유하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달리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는 당해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여행 대금등을 제 12 조 제 2 항, 제 16 조 제 1 항 후단 제 19 조 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말합니다.

- 4 이 부에서 「전자승낙통지」란 계약의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이며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중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전화기 (이하 「전자 계산기등」이라고 합니다.) 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등을 접속되는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서 송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이 약관으로 「카드 이용일」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 대금등의 지불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할 날을 말합니다.

(여행 계약의 내용)

제 3 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에 있어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 일정을 따르고 운송·숙박기관등의 제공하는 운송·숙박기타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 (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여정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배 대행자)

제 4 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이행할 때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 또는 국내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직업으로서 이행하는 자 기타의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제 2 장 계약의 체결

(기획 서면의 교부)

제 5 조 당사는 당사에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에게서의 의뢰가 있었을 때는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당해의뢰의 내용에 따라 작성한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 기타의 여행 조건에 관한 기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 (이하 「기획 서면」이라고 합니다.) 를 교부합니다.

2 당사는 전항의 기획 서면에 있어서 여행 대금의 내역으로서 기획에 관한 취급 요금 (이하 「기획 요금」이라고 말합니다.) 의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신청)

제 6 조 전조 제 1 항의 기획 서면에 기재된 기획의 내용에 관해서 당사에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고 합니다.) 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 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전조 제 1 항의 기획 서면에 기재된 기획의 내용에 관해서 당사에 통신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이 관계 없이 회원번호 기타의 사항을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제 1 항의 신청금은 여행 대금 (그 내역으로서 금액이 명시된 기획 요금을 포함합니다.) 또는 취소료 또는 조약위반료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4 수주형 기획 여행의 참가할 때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의 신청시에 신청해 주십시오.

이 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것에 응합니다.

5 전항의 제안에 따라서 당사가 여행자를 위해서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여행자부담으로 합니다.

(계약 체결의 거부)

제 7 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 ①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고 또는 단체 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 ②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 날.
- ③ 통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소유하는 신용카드가 무효인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 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때.

(계약의 성립 시기)

제 8 조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체결을 승낙하고 제 6 조 제 1 항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통신 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급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해계약에 있어서 전자승낙 통지를 발급할 경우는 당해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 9 조 당사는 전조가 정하는 계약의 성립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 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계약서면」이라고 말합니다.) 를 교부합니다.

2 당사는 제 5 조 제 1 항의 기획 서면에 기획 요금의 금액을 명시했을 경우는 당해금액을 전항의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3 당사가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에 의해 준비해 여정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제 1 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것에 따릅니다.

(확정 서면)

제 10 조 전조 제 1 항의 계약서면에 있어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 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계약서면에 이용 예정의 숙박 기관 및 여행 계획상 중요한 운송 기관의 명칭을 한정해서 열거해 당해계약서면 교부후 여행 개시일의 전날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7 일째 되는 날 이후에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신청이 행해졌을 경우 있어서는 여행 개시일) 까지인 당해계약서면에 정한 날까지 이 내용들의 확정 상황을 기재한 서면 (이하 「확정 서면」이라고 합니다.) 을 교부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배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에게서 문의가 있었을 때는 확정 서면의 교부전이어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3 제 1 항의 확정 서면을 교부했을 경우에는 전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준비해 여정을 관리하는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당해확정 서면에 기재하는 데에 특정됩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 11 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고 기획 서면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 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 서면의 교부에 대신해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당해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기재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의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준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의 사용에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준비되 있지 않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파일 (다만 당해여행자의 용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여행대금)

제 12 조 여행자는 여행 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 대금의 지불을 받습니다. 또 카드 이용일은 여행 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 3 장 계약의 변경

(계약 내용의 변경)

제 13 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기타의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내용 (이하 「계약 내용」이라고 합니다.)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2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기타의 당사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는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여행자에게 미리 당해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유 및 당해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단 긴급시의 부득이한 경우는 변경후에 설명합니다.

(여행 대금의 금액의 변경)

제 14 조 수주형 기획 여행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이용하는 운송 기관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운임요금 (이하 이 조에 있어서 「적용 운임·요금」이라고 말합니다.)이지만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해 수주형 기획 여행의 기획서면의 교부할 때에 명시한 시점에 있어서 유효한 것으로서 공시되어 있는 적용 운임·요금에 비교해서 보통 상정되는 정도를 대폭 넘어 증액 또는 감액될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여행 대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 당사는 전항이 결정한 것에 의해 여행 대금을 증액됐을 때는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15일째에 되는 날보다 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3 당사는 제 1 항에 결정한 적용 운임·요금의 감액이 행해질 때는 동항에 결정한 것에 의해 그 감소액수만 여행 대금을 감액합니다.

4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근거하는 계약 내용의 변경에 의해 여행의 실시에 요하는 비용(당해계약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 그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조약위반료기타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의 감소 또는 증가가 생길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기관등이 당해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등의 좌석, 방 기타의 여러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당해계약 내용의 변경시 그 범위내에 있어서 여행 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5 당사는 운송·숙박 기관등의 이용 인원에 의해 여행 대금이 다른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했을 경우에 있어서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성립후에 당사 책임에 관계 없이 이용 인원이 변경이 되었을 때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의해 여행 대금의 액수를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대)

제 15 조 당사와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고 계약상의 지위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자는 전항에 정한 당사의 승낙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 후

소정의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 제 1 항의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을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이후 여행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 받은 제 3 자는 여행자의 당해수수형 기획 여행 계약에 관한 일절의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한 것으로 합니다.

제 4 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제 16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 1 에 정해진 취소료를 당사에 지불하고 수수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 계약을 해제할 경우 있어서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 여행자의 서명 없이 이 취소료의 지불을 받습니다.

- 2 여행자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여행 개시전에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수수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에 의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단, 그 변경이 별도 제 2 상란에 열거하는 내용의 기타 중요한 내용일 때에 한합니다.

②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대금이 증액되었을 때.

③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능이 될 우려가 지극히 클 때.

④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제 10 조 제 1 항의 기일까지 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⑤ 당사의 책임에 의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3 여행자는 여행 개시후에 있어서 당해여행자의 책임에 관계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어졌을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렸을 때는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취소료를 지불하지 않고 여행 서비스의 수령할 수 없어진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 대금 중 여행 서비스의 수령할 수 없어진 부분에 관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단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금액으로부터 당해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조약 위반료 기타의 이미 지불하고 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에 관련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등 - 여행 개시전의 해제)

제 17 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한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 시작전에 수수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① 여행자가 병 그리고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에 의해 당해여행에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③ 여행자가 계약 내용에 관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추구했을 때.

④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필요한 강설량등의 여행 실시 조건에 있어서의 계약체결시에 명시한 내용이 성취하지 되지 않을 우려가 지극히 클 때.

⑤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당사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이 되거나 불가능이 될 우려가 지극히 클 때.

⑥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여행자가 소유하는 크레딧 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 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에 따라서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여행자가 제 12 조 제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한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는 당해기일 다음날에 있어서 여행자가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제 1 항에 정한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조약위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사의 해제권 -여행 개시후의 해제)

제 18 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행 개시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일부를 해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① 여행자가 병 그리고 필요한 보호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에 의해 여행의 계속을 견딜 수 없을 때.

②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한 여행사 안내원 기타 관련인에 의한 당사의 지시에 위배, 이틀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게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해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당해여행의 안전과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때.

③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기타의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겨서 여행이 계속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2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당사와 여행자와의 계약 관계는 앞으로 생기는 일에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이미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행해진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 대금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않고 있는 여행 서비스에 관련되는 부분에 관련되는 금액으로부터 당해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조약위반료기타의 이미 지불 또는 이제부터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에 관련되는 금액을 뺀 것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여행 대금 환불)

제 19 조 당사는 제 14 조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여행 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 조의 규정에 의해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이 해제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 대하여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여행 개시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해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 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개시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 일 이내에 여행자에 대하여 당해금액을 환불합니다.

2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있어서 제 14 조 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의해 여행 대금이 감액되었을 경우 또는 전 3 조의 규정에 의해 통신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 대하여 환불해야 할 금액이 생겼을 때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여행자에 대하여 당해금액을 환불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 개시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해제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7 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 시작후의 해제에 의한 환불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30 일 이내에 여행자에 대하여 환불해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여행자에게 당해통지를 한 날을 카드 이용일로 합니다.

3 전 2 항의 규정은 제 28 조 또는 제 31 조 제 1 항에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 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해제후의 귀로 준비)

제 20 조 당사는 제 18 조 제 1 항 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규정에 의해 여행 개시후에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서 여행자가 당해여행의 출발지에 되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여행 서비스의 수배를 맡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출발지에 되돌아오기 위한 여행에 필요로 하는 일절의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5 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제 21 조 당사는 동행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 (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를 정해서 신청한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 책임자)

제 22 조 당사는 특약을 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 (이하 「구성자」라고 말합니다.) 의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절의 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단체·그룹에 관계되는 여행 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 26 조 제 1 항의 업무는 당해계약 책임자 임무자 사이에서 실시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한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현재에 지고 또는 앞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개시후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와 간주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 23 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제 6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은 당사가 당해서면을 교부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 6 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제 24 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여행의 실시의 확보에 노력하고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합니다. 단 당사가 여행자와 이것과 다른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① 여행자가 여행중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할 것.

② 전호의 조치를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을 변경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는 대체 서비스의 준비를 행할 것. 이 때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는 변경후의 여행일정이 당초의 여행 일정의 취지에 필적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 또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후의 여행 서비스가 당초의 여행 서비스와 같은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 25 조 여행자는 여행 개시후 여행 종료까지의 사이에 있어서 단체로 행동할 때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 당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행사 안내원등의 업무)

제 26 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의해 여행사 안내원 기타 관련인을 동행시켜서 제 24 조 각호에

열거하는 업무기타 당해수주형 기획 여행에 부수되어서 당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게 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여행사 안내원 기타 관련인이 동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 시부터 20 시까지로 합니다.

(보호 조치)

제 27 조 당사는 여행중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에 의해 보호가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당사로 인한 책임사유가 아닐 때는 당해조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여행자는 당해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의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7 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 28 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이행할 때 당사 또는 당사가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수배를 대행시킨 자 (이하 「수배대행자」라고 말합니다.)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2 년이내에 당사에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당사 또는 당사의 준비 대행자의 관여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화물에 대해서 생긴 제 1 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14 일이내에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20 일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15 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로서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제 29 조 당사는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당사의 책임 여부를 막론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 정한 것으로 여행자가 수주형 기획 여행 참가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화물에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해서 미리 정한 금액의 보상금 및 위문금을 지불합니다.

2 전항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가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책임을 질 때는 그 책임에 근거해서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의 금액의 한도에 있어서 당사가 지불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당해손해 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3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당사 배상금지불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전항의 규정에 의해 손해 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합니다.) 에 상당하는 금액만 절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의 수주형 기획 여행 참가중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의 여행 대금을 수수해서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 여행에 대해서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내용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여정보증)

제 30 조 당사는 별표 제 2 상란에 열거하는 계약 내용에 중요한 변경(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변경(운송·숙박 기관등이 당해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이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송·숙박 기관등의 좌석, 방 기타의 여러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을 제외합니다.) 이 생겼을 경우는 여행 대금에 동표 하란에 기재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30 일이내에 지불합니다. 단 당해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①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한 변경

- a 천재지변
- b 전란
- c 폭동
- d 관공서의 명령
- e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 f 당초의 운행 계획에 따르지 않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 g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확보 때문에 필요한 조치

② 제 13 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이 변경되었을 때 당해변경된 부분 및 제 16 조부터 제 18 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당해해제된 부분에 관련되는 변경

- 2 당사가 지불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한명에 대하여 한 수주형 기획 여행에 대해서 여행 대금에 15%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 여행자 한명에 대하여 한 수주형 기획 여행에 대해서 지불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액이 1000 엔미만일 경우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3 당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보상금을 지불한 후에 당해변경에 대해서 당사에 제 28 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해변경에 관계되는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동항의 규정에 근거해 당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액을 상쇄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 31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2 여행자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해 여행자의 권리, 의무 기타의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 여행자는 여행 개시후에 있어서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때는 여행지에 있어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준비대행자 또는 당해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8 장 영업 보증금 (여행업 협회의 보증 사원이 아닐 경우)

(영업 보증금)

제 32조 당사와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생긴 채권에 관해 당사가 여행업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공탁하고 있는 영업 보증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 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명칭
- ② 소재지

제 8 장 변제 업무 보증금 (여행업 협회의 보증 사원일 경우)

(변제 업무 보증금)

- 제 32 조** 당사는 사단 법인 여행업 협회(동경도 구 정 정목 번 호)의 보증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 2 당사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생기게 된 채권에 관해서 전항의 사단 법인여행업 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 업무보증금으로부터 언제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당사는 여행업법 제 22 조의 10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해 사단 법인여행업 협회에 변제 업무보증금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 7 조 제 1 항에 근거하는 영업 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표 제 1 취소료 (제 16 조 제 1 항관계)

①국내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소료
(1)다음 항 이외의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	
a b부터 f 까지에 열거하는 경우에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 있어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했을 경우에 한한다.)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b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20 일 쯤(당일치기 여행에 있어서는 10 일 쯤)에 되는 날 해제할 경우(c 부터 f 까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20%이내
c 여행 개시일의 전날부터 계산해서 7 일 쯤 되는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 (d 부터 f 까지의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30%이내
d 여행 개시일의 전날에 해제할 경우	여행대금의 40%이내
e 여행 개시 당일에 해제할 경우 (f 의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50%이내
f 여행 개시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이내

2)전세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	당해선박에 관계되는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②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소료
(1)일본출국시는 귀국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다음 항에 열거하는 여행 계약을 제외한다.)	
a b부터 d 까지 열거하는 경우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 있어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했을 경우에 한한다.)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b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30 일째이후에 해제할 경우 c 및 d 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20%이내
c 여행 개시일의 전전날이후에 해제할 경우 (d 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50%이내
d 여행 개시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 00%이내

(2)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	
a b부터 e 까지 열거하는 경우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 있어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했을 경우에 한한다.)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여행대금의 20%이내
b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90 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c 부터 e 까지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50%이내
c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30 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d 및 e 에 내걸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80%이내
d 여행 시작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20 일째 되는 날 이후에 해제할 경우(e 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여행대금의 100%이내
e 여행 시작일의 전날부터 기산해서 3 일째 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가의 경우	여행대금의 100%이내
(3) 일본출국시 및 귀국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	
당해선박에 관계되는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별표 제 2 변경 보상금(제 30 조 제 1 항관계)

변경보상금의 지불이 필요가 되는 변경	한 사건당 비율(%)	
	여행개시전	여행개시후
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개시일 또는 여행 종료일의 변경	1.5	3.0
②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 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그 밖의 여행의 목적지의 변경	1.0	2.0
③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 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보다 낮은 요금의 내용으로 변경(변경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의 합계액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가 떨어진 경우에만 한한다.)	1.0	2.0
④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 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이름의 변경	1.0	2.0
⑤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내의 여행 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 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 변경	1.0	2.0
⑥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내와 일본외와의 사이에 있어서의 직행편의승계편 또는 경유편으로 변경	1.0	2.0
⑦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 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1.0	2.0
⑧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 기관의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기타의 객실의 조건의 변경	1.0	2.0

주 ① 「여행 개시전」이란 당해변경에 대해서 여행 개시일의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하고 「여행 개시후」란 당해변경에 대해서 여행 시작 당일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주 ② 확정 서면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면」을 「확정 서면」이라고 다른 음으로 읽은 뒤에서 이 결면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면의 기재 내용과 확정 서면의 기재 내용과의 사이 또는 확정 서면의 기재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과의 사이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각각의 변경에 대해서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주 ③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열거하는 변경에 관련되는 운송 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할 경우는 일박에 대해서 한 건으로서 취급합니다.

주 ④ 제 4 호에 열거하는 운송 기관의 회사이름의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변경을 수반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 ⑤ 제 4 호 또는 제 7 호 또는 제 8 호에 열거하는 변경이 일승 차, 배등 또는 일박 안에서 복수 생겼을 경우이어도 일승 차, 배등 또는 일박에 대해서 한 건으로 취급합니다.

별지

특별보상 규정

제 1 장 보상금등의 지불

(당사의 지불 책임)

제 1 조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 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 여행 참가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고 합니다.) 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본장부터 제 4 장까지의 규정에 의해 여행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 사망보상금, 후유장해보상금, 입원 위문금 및 통원 위문금 (이하 「보상금등」이라고 말합니다.) 을 지불합니다.

2 전항의 상해에는 신체외부에서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 또는 일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했을 때에 급격하게 생기게 되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생기는 중독증상을 제외합니다.) 을 포함합니다. 단, 세균성 음식물 중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제 2 조 이 규정에 있어서 「기획 여행」이란 표준 여행업 약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 제 2 조 제 1 항 및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의 부 제 2 조 제 1 항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2 이 규정에 있어서 「기획 여행 참가중」이란 여행자가 기획 여행에 참가할 목적을 가지고 당사가 미리 준비한 승차권류 등에 의해 제공되는 당해기획 여행일정에 정하는 최초의 운송·숙박 기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개시했을 때부터 최후의 운송·숙박 기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완료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여행자가 미리 정해진 기획 여행의

일정에서부터 이탈할 경우에 있어서 이탈 및 복귀의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신고하고 있었을 때는 이탈 때부터 복귀의 예정 때까지의 동안은 「기획 여행 참가중」이라고 하고 또 여행자가 이탈 및 복귀의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탈했을 때 또는 복귀의 예정 없이 이탈했을 때는 그 이탈 때부터 복귀의 때까지의 사이 또는 그 이탈했을 때부터 그 뒤는 「기획 여행 참가중」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당해기획 여행일정에 여행자가 당사의 준비에 관계되는 운송·숙박 기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일체 받지 않는날 (여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취지 및 당해일에 생기게 되는 사고에 의해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위문금의 지불이 행하여 지지 않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했을 때는 당해일은 「기획 여행 참가중」라고 하지 않습니다.

3 전항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시작했을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쪽인가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여행사 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를 실시할 경우 그 접수 완료시
- ② 전호의 접수가 행하여 지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최초의 운송·숙박 기관등이
 - a 항공기일 때는 탑승 수속의 완료시
 - b 선박일 때는 승선 수속의 완료시
 - c 철도일 때는 개찰의 종료 또는 개찰이 없을 때는 당해열차 승차시
 - d 차량일 때는 승차시
 - e 숙박 기관일 때는 당해시설에의 입장시
 - f 숙박 기관이외의 시설일 때는 당해시설의 이용 수속 종료시로 합니다.

4 제 2 항의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것을 완료했을 때」란 다음 각호의 어느쪽인가의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여행사 안내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알릴 경우는 알렸을 시
- ② 전호의 해산의 통지가 행하여 지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최후의 운송·숙박 기관등이
 - a 항공기일 때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구내에서의 퇴장시
 - b 선박일 때는 하선시
 - c 철도일 때는 개찰 종료시 또는 개찰이 없을 때는 당해열차하차시
 - d 차량일 때는 하차시
 - e 숙박 기관일 때는 당해시설에서의 퇴장시
 - f 숙박 기관이외의 시설일 때는 당해시설에서의 퇴장시로 합니다.

제 2 장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①)

제 3 조 당사는 다음 각호에 내세우는 사유에 의해 생기게 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① 여행자의 고의. 단 해당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②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의 고의. 단 그 사람이 사망보상금의 일부의 수취인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③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 행위.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④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 자격을 가지지 않고 또는 술에 취해서 정상한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사이에 생긴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⑤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하고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사이에 생긴 사고.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⑥ 여행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상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⑦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기타의 의료처치 단 당사의 보상해야 할 상해를 치료할 경우에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⑧ 여행자의 형의 집행 또는 구류 또는 입감중에 생긴 사고

⑨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 반란기타 이것들에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 (이 규정에 있어서는 군중 또는 다수의 사람의 집단의 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의 지구에 있어서 현저하게 평온이 해쳐져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⑩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은 것으로 합니다.) 혹은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되어진 물건(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기타가 유해한 특성 또는 이것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전 2 호의 사유에 수반해서 생기게 된 사고 또는 이것들에 따르는 질서의 혼란에 근거해서 생기게 한 사고

⑫ 제 10 호 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오염

2 당사는 원인의 여하를 막론하고, 경부증후군 (소위 「편타성 손상」) 또는 요통으로 타각 증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②)

제 4 조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에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에 내세우는 사유에 의해 생기게 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① 지진, 분화 또는 해일

② 전호의 사유에 수반해서 생기게 된 사고 또는 이것들에 수반하는 질서의 혼란에 따라 생긴 사고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③)

제 5 조 당사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각호의 행위가 당사가 미리 정한 기획 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가 아니면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단 각호의 행위가 당해여행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행 일정외의 기획 여행 참가중에 동종의 행위에 의해 생기게 한 상해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을 지불합니다.

① 여행자가 별표 제 1 에 정하고 있는 운동을 행하고 있는 사이에 생기게 된 상해

② 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 부착 자전거 또는 모터 보트에 의한 경기, 경쟁, 흥행 (모두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을 말합니다.)를 하고 있는 동안에 생기게 된 상해.

단 자동차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이용해서 도로상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있을 때에 생기게 된 상해에 대해서는 기획 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금등을 지불합니다.

③ 항공운송 사업자가 노선을 정해서 운행하는 항공기(정기편이거나 부정기편이거나 관계 없습니다.)

이외의 항공기를 여행자가 조종하고 있는 사이에 생기게 한 상해

제 3 장 보상금등의 종류 및 지불 액수

(사망 보상금의 지불)

제 6 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사고날부터 180 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에 있어서는 2500 만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에 있어서는 1500 만엔 (이하 「보상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을 사망보상금으로서 여행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불합니다. 단, 당해여행자에게 이미 지불한 후 후유장해보상금이 있을 경우는 보상 금액으로부터 이미 지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의 지불)

제 7 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사고날부터 180 일 이내에 후유장해(신체에 남겨진 장애에 있어서도 회복할 수 없는 기능의 중대한 장애 또는 신체의 일부의 결손으로 동시에 그 원인이 된 상해가 나온 후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은 것으로 합니다.) 가 생겼을 경우는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보상금액에 별표제 2 의 각호에 내세우는 률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상금으로서 여행자에게 지불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여행자가 사고의 날부터 180 일을 넘고 여전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당사는 사고의날 부터 181 일째 날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근거해 후유장해의 정도를 인정하고 후유장해보상금을 지불합니다.

3 별표 제 2 의 각호에 열거하지 않고 있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여행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의 정도에 응하고 더욱 별표제 2 의 각호의 구분에 기준 해서 후유장해보상금의 지불액수를 결정합니다.

단, 별표 제 2 의 ① c, ① d, ② c, ④ d 및 ⑤ b 에 열거하는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4 동일사고에 의해 두가지 종류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전 3 항을 적용해서 그 합계액수를 지불합니다. 단 별표 제 2 의 7, 8 및 9 에 규정하는 상지(팔 이나 손) 또는 하지(다리 및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일지에 후유장해보상금은 보상금액의 60%을 한도로 합니다.

5 전 각항에 근거해서 당사가 지불해야 할 후유장해보상금은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한 기획 여행에 대해서 보상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입원 위문금의 지불)

제 8 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의 생활을 할 수 없어지고 입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 자택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해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늘 의사의 관리 아래에 두고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합니다.) 했을 경우는 그 일수 (이하 「입원 일수」라고 합니다.) 에 대해서 다음 구분을 따라서 입원 위문금을 여행자에게 지불합니다.

- ①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
 - a 입원일수 180 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40 만엔
 - b 입원 일수 90 일 이상 18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 만엔
 - c 입원 일수 7 일 이상 9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 만엔
 - d 입원 일수 7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4 만엔
- ②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
 - a 입원일수 180 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 만엔
 - b 입원 일수 90 일 이상 18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 만엔
 - c 입원 일수 7 일 이상 9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 만엔
 - d 입원 일수 7 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 만엔

2 여행자가 입원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별표 제 3 의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때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상 입원 일수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여행자 한 명에 대해서 입원 위문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입원 위문금과 후유장해 보상금을 같이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 액수를 지불합니다.

(통원 위문금의 지불)

제 9 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결과로서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정상생활에 지장이 생겨 통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있어서, 병원 또는 진료소에 다니고,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왕진을 포함합니다.) 를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같은 것으로 합니다.) 했을 경우에 있어서 그 일수 (이하 「통원 일수」 라고 말합니다.)이 3 일 이상이 되었을 때는 당해일수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통원 위문금을 여행자에게 지불합니다.

①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

- a 통원 일수 90 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 만엔
- b 통원 일수 7 일 이상 9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 만엔
- c 통원 일수 3 일 이상 7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 만엔

②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

- a 통원 일수 90 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5 만엔
- b 통원 일수 7 일 이상 90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 만 5 천엔
- c 통원 일수 3 일 이상 7 일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만엔

2 여행자가 통원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해서 의사의 지시에 의해 기브스 등을 일상시 착용한 결과 평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또는 평상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당사가 인정했을 때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상 통원 일수로 간주합니다.

3 당사는 평상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또는 평상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에 상해가 나은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 위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4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사고날부터 180 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 위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통원 위문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통원위문금과 후유장해 보상금을 같이 지불해야 할 경우에는 그 합계액수를 지불합니다.

(입원 위문금 및 통원 위문금의 지불에 관한 특칙)

제 10 조 당사는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입원 일수 및 통원 일수가 각각 1 일 이상이 되었을 경우는 전 2 조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 각호에 써 있는 위문금 중 어느쪽인가 금액이 큰 쪽(동액의 경우에는 제 1 호에 써 있는 것)만을 지불합니다.

① 당해입원 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불해야 할 입원 위문금

② 당해통원 일수(당사가 입원 위문금을 지불해야 할 기간 중의 것을 제외합니다.)에 당해입원 일수를 더한 일수를 통원 일수로 간주한 뒤에 당해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불해야 할 통원 위문금

(사망의 추정)

제 11 조 여행자가 탑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되고 나서 또는 조난하고 나서 30 일을 경과해도 여전히 여행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조난한 날에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제 12 조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의해 또는 제 1 조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의해 제 1 조의 상해가 중대하게 되었을 때는 그 영향이 없었을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해서 이것을 지불합니다.

제 4 장 사고의 발생 및 보상금등의 청구의 수속

(상해정도등에 관한 설명등의 청구)

제 13 조 여행자가 제 1 조의 상해를 입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에게 대해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또는 여행자의 신체의 진료 또는 사체의 검안을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는 이것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는 당사의 관지하지 않는 사유에 의해 제 1 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등에 대해서 당사에 대하여 당해사고의 날부터 30 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 2 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그 설명 또는 보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혹은 부실한 것을 알렸을 때는 당사는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상금등의 청구)

제 14 조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보상금등의 지불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에 대해서 당사 소정의 보상금등의 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① 사망 보상금 청구의 경우

- a 여행자의 호적 등본 또는 법정상속인의 호적 등본 및 인감 증명서
- b 공적 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c 여행자의 사망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② 후유장해 보상금 청구의 경우

- a 여행자의 인감 증명서
- b 공적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c 후유 장애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③ 입원 위문금 청구의 경우

- a 공적 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b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c 입원 일수 또는 통원 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④ 통원 위문금 청구의 경우

- a 공적기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b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c 입원 일수 또는 통원 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2 당사는 전항이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또는 전항의 제출서류의 일부의 생략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받아야 할 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혹은 부실한 내용을 알렸을 때는 당사는 보상금등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위)

제 15 조 당사가 보상금등을 지불했을 경우라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 제 3 자에 대하여 소유하는 손해 배상청구권은 당사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제 5 장 휴대품 손해 보상

(당사의 지불 책임)

제 16 조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 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 여행 참가중에 생기게 된 우연한 사고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신변품 (이하 「보상 대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에 손해를 입었을 시에 본장의 규정에 의해 휴대품 손상금 (이하 「손해보 배상금」이라고 말합니다.) 를 지불합니다.

(손해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 17 조 당사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해 생기게 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① 여행자의 고의.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② 여행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고의. 단 여행자에게 손해보상금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니었을 경우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③ 여행자의 자살 행위, 범죄 또는 투쟁 행위.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④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 자격을 가지지 않고 또는 술에 취해서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 또는 원동기 부착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사고. 단 당해 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⑤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행하고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동안에 생긴 사고. 단, 당해여행자 이외의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⑥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나라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
단 화재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처치로서 행해졌을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⑦ 보상 대상품의 하자. 단, 여행자 또는 이것을 대신해서 보상 대상품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있었어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를 제외합니다.
- ⑧ 보상 대상품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가 먹음, 벌레가 먹음 등
- ⑨ 단순한 외관의 손상이며 보상 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손해
- ⑩ 보상 대상품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서 다른 보상 대상품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꼭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 ⑪ 보상 대상품의 잊고 두고 옴 또는 분실
- ⑫ 제 3 조 제 1 항 제 9 호부터 제 12 호까지 열거하는 사유

2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 여행의 경우에 있어서 전항에 정한 것 이외에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해 생기게 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① 지진, 분화 또는 해일
- ② 전항의 사유에 수반해서 생기게 된 사고 또는 이것들에 따르는 질서의 혼란에 근거해서 생긴 사고

(보상 대상품 및 그 범위)

제 18 조 보상 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 여행 참가 중에 휴대하는 그 소유의 신변물건에 한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것은 보상 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현금, 수표기타의 유가 증권, 인지, 우표 기타 이것들에 준하는 물건

- ②크레디트 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기타 이것들에 준하는 물건
- ③원고본,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것들에 준하는 물건(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C·D ROM,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등의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 ④선박(요트, 모터 보트 및 보트를 포함합니다.) 및 자동차, 원동기 부착자전거 및 이것들의 부속품 ⑤산악등반 용구, 탐험 용구 기타 이것들에 비슷한것
- ⑥의치, 의지, 콘택트 렌즈 기타 이것들에 비슷한 것
- ⑦동물 및 식물
- ⑧기타 당사가 미리 지정한 물건

(손해액 및 손해보상금의 지불액수)

제 19 조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손해의 금액 (이하 「손해액」이라고 합니다.) 은 그 손해가 생긴 지역 및 때에 있어서의 보상 대상품의 가격 또는 보상 대상품을 손해 발생의 직전의 상태에 회복하는 것에 필요한 수선비용 및 다음조 제 3 항의 비용의 합계액수의 어느쪽인가 낮은 쪽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 2 보상대상품의 한개 또는 한 대에 관한 손해액이 10 만엔을 넘을 때는 당사는 그것의 손해금액을 10 만엔으로 간주해서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3 당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보상금의 액은 여행자 한 명에 대하여 한 기획 여행에 대해서 15 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단 손해액이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일회의 사고에 대해서 3000 엔을 넘지 않을 경우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손해의 방지등)

제 20 조 여행자는 보상대상품에 대해서 제 16 조에 규정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①손해의 방지 경감에 노력할 것.
- ②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 대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의 유무를 지체 없이 당사에 통지할 것.
- ③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경우는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해서 필요한 수속을 취할 것.

2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 제 1 호에 위반했을 때는 방지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뺀 잔액을 손해금액으로 간주하고 동항 제 2 호에 위반했을 때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며 또 동항 제 3 호에 위반했을 때는 취득해야 할 권리의 행사에 의해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합니다.

- 3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 ①제 1 항제 1 호에 규정하는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안에서 당사가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하는 물건
 - ②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수속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

(손해 보상금의 청구)

제 21 조 여행자는 손해 보상금의 지불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손해보상금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①경찰서 또는 이것을 대신해야 할 제 3 자의 사고증명서
- ②보상 대상품의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③기타 당사의 요구하는 서류

2 여행자가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또는 제출서류에 대해서 고의로 부실한 것을 표시하고 또는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했을 때(제 3 자로 해서 하게 했을 때도 같은 것으로 합니다.) 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제 22 조 제 16 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불해야 할 보험계약이 있을 경우는 당사는 당사가 지불해야 할 손해보상금액을 감액할 경우가 있습니다.

(대위)

제 23 조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손해에 대해서 여행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유할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불한 손해보상금의 액수의 한도내에서 당사에 이전합니다.

별표 제 1(제 5 조 제 1 호관계)

산악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햄머 등의 등산 용구를 사용하는 물건)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동력기 (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탑승 자이로
 플레인 탑승 기타 이것들에 비슷한 위험한 운동

별표 제 2(제 7 조 제 1 항, 제 3 항 및 제 4 항관계)

①눈의 장애	
a 양쪽 눈이 실명했을 때.	100%
b 한 쪽 눈이 실명했을 때.	60%
c 한 쪽의 교정 시력이 0.6 이하가 되었을 때.	5%
d 한 쪽의시야 협착(정상시야의 각도 합계의 60%이하가 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이 되었을 때.	5%
②귀의 장애	
a 양쪽 귀의 청력을 전혀 잃었을 때.	80%
b 한 쪽 귀의 청력을 전혀 잃었을 때.	30%
c 한 쪽 귀의 청력이 50 센티미터이상에서는 통상의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	5%
③코의 장애	
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20%
④저작, 언어의 장애	
a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100%
b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35%
c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애를 남길 때.	15%
d 치아에 5 개이상의 결손이 생겼을 때.	5%

⑤ 외모(안면·두부·경부를 말한다.)의 추태 a 외모에 현저한 추태를 남길 때. b 외모에 추태(안면에 있어서는 직경 2 cm의 흉터, 길이 3 cm의 선상흉터정도를 말한다.)를 남길 때	15% 3%
⑥척주의 장애 a 척주에 현저한 기형 또는 현저한 운동 장애를 남길 때. b 척주에 운동장애를 남길 때. c 척주에 기형을 남길 때	40% 30% 15%
⑦팔(손관절이상을 말한다.),다리(발관절이상을 말한다.) 의장애 a 한 팔 또는 한 다리를 잃었을 때. b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 대관절중의 2 관절 또는 3 관절의 기능을 전혀 못 할 때. c 한 팔 또는한 다리의 3 대관절중의 한 관절의 기능을 전혀 못 할 때. d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에 장애를 남길 때.	60% 50% 35% 5%
⑧손가락의 장애 a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절간관절)이상으로 잃어버렸을 때. b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c 엄지 손가락이외의 한 손가락을 제 2 손가락관절(원위지절간관절)이상으로 잃었을 때. d 엄지 손가락이외의 한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20% 15% 8% 5%
⑨ 발가락 손가락의 장애 a 한 발의 제 1 발가락을 발가락절간 관절이상으로 잃었을 때. b 한 발의 제 1 발가락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10% 8%

c 제 1 발가락이외의 한 발가락을 제 2 발가락절간관절(원위지절간관절)이상으로 잃었을 때. d 제 1 발가락이외의 한 발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남길 때.	5% 3%
⑩기타 신체가 현저한 장애에 의해 종신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없을 때.	100%
주 제 7 호, 제 8 호 및 제 9 호의 규정중 「이상」 이란 당해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별표 제 3(제 8 조 제 2 항관계)

- ①양쪽눈의 교정 시력이 0.06 이하가 되어 있을 것.
- ②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을 잃고 있을 것.
- ③양쪽귀의 청력을 잃고 있는 것.
- ④양쪽상지의 손관절이상의 모든 관절의 기능을 잃어 있을것. .
- ⑤한 하지의 기능을 잃어 있을것
- ⑥흉복부장기의 장애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 ⑦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 ⑧기타 상기부위의 합병 장애등 때문에 신체의 자유가 주로 섭식, 세면 등의 기거 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주) 제 4 호의 규정중 「이상」 과는 당해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수배 여행 계약의 부

제 1 장 총칙

(적용 범위)

제 1 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수배여행 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 되지 않고 여행자의 불리가 안되는 범위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이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 2 조 이 약관에서 「수배 여행 계약」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여행자를 위해서 대리, 매개 또는 중개를 하는 것 등을 통해 여행자가 운송.숙박 기관등의 제공하는 운송. 숙박기타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 (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말합니다.)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수배하는 것을 말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으로 「국내여행」이란 일본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약관으로 「여행 대금」이란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서 운임.숙박료 기타의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 및 당사소정의 여행 업무취급 요금(변경 수속 요금 및 취소 수속 요금을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4 이 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 회사 (이하 「제휴회사」라고

말합니다.) 의 카드 회원과의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스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체결하는 수배 여행 계약이며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배여행 계약에 근거하는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채권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달리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 여행 대금등을 제 16 조 제 2 항 또는 제 5 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배 여행 계약을 말합니다.

5 이 부에서 「전자승낙 통지」란 계약의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이며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중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전화기 (이하 「전자 계산기등」이라고 합니다.)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등과 접속되는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서 송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 약관으로 「카드 이용일」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배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 대금등의 지불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할 날을 말합니다.

(수배 채무의 종료)

제 3 조 당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여행 서비스의 수배 를 했을 때는 수배여행 계약에 따라 당사의 채무의 이행은 종료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부적당등의 사유에 의해 운송.숙박 기관등과의 사이에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경우여도 당사가 그 의무를 다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여행업무 취급 요금 (이하 「취급 요금」이라고 합니다.)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운송.숙박 기관등과의 사이에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취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수배대행자)

제 4 조 당사는 수배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내 또는 일본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직업으로서 행하는 자 기타의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제 2 장 계약의 성립

(계약의 신청)

제 5 조 당사와 수배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 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당사와 통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이 관계 없이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제 1 항의 신청금은 여행 대금, 취소료 기타의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금전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계약 체결의 거부)

제 6 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배여행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①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날.

②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여행자의 소유하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가 무효인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할 수 없을 때.

(계약의 성립 시기)

제 7 조 수배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 5 조 제 1 항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통신 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사가 제 5 조 제 2 항의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행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해계약에 있어서 전자승낙 통지를 발행할 경우는 당해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 8 조 당사는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서면에 의한 특약을 가지고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계약의 체결의 승낙만에 의해 수배여행 계약을 성립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배여행 계약의 성립 시기는 전항의 서면에 있어서 분명히 합니다.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제 9 조 당사는 제 5 조 제 1 항 및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운송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여행 계약이며 여행 대금과 교환으로 당해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신청을 접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배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

제 10 조 당사는 수배 여행 계약의 성립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 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계약서면」이라고 말합니다.)를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승차권류, 숙박권기타의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는 당해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했을 경우에 있어서 당사가 수배여행 계약에 의해 수배하는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당해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것에 따릅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 11 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고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에 대신하고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당해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기재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의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준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의 사용에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대비되지 않고 있을 때는 당사의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파일 (다만 당해여행자의 용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 3 장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소

(계약 내용의 변경)

제 12 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기타의 수배여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추구하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2 전항의 여행자의 요구에 의해 수배여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여행자는 이미 완료한 수배를 취소할 때에 운송.숙박 기관등에 지불해야 할 취소료, 조약위반료기타의 수배의 변경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변경 수속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당해수배 여행 계약의 내용의 변경에 의해 생기게 되는 여행 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행자에 의한 임의 해제)

제 13 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수배여행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배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이미 여행자가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또는 아직 제공을 받지 않는 여행 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조약위반료 기타의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취소 수수료 및 당사가 얻을 예정이었던 취급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제)

제 14 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배 여행 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 ①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 ②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이며 여행자가 소유하는 크레디트 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조약위반료 기타의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취소 수수료 및 당사가 얻을 예정이었던 취급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사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제 15 조 여행자는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여행 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해졌을 때는 수배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배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그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이미 지불,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 수수한 여행 대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3 전항의 규정은 여행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4 장 여행 대금

(여행대금)

제 16 조 여행자는 여행 시작전의 당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당사에 대하여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 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의 여행자의 서명 없이 여행 대금의 지불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확정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3 당사는 여행 시작전에 있어서 운송·숙박 기관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 시세의 변동 기타의 사유에 의해 여행 대금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는 당해여행 대금을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4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 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이며 제 3 장 또는 제 4 장의 규정에 의해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등이 생겼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의 여행자서명 없이 당해비용등의 지불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카드 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등의 금액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단 제 14 조 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수배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가 정한 지불 방법에 의해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등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행 대금의 정산)

제 17 조 당사는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서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으로 여행자의 부담에 될 요금 및 취급 요금 (이하 「정산 여행 대금」이라고 말합니다.) 과 여행 대금으로서 이미 수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 종료후 다음 항 및 제 3 항에 정한 것에 의해 신속하게 여행 대금의 정산을 합니다.

- 2 정산 여행 대금이 여행 대금으로서 이미 수수한 금액을 넘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 정산 여행 대금이 여행 대금으로서 이미 수수한 금액에 차지 않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제 5 장 단체·그룹 수배

(단체·그룹 수배)

제 18 조 당사는 같은 행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 (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를 정해서 신청한 수배여행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 책임자)

제 19 조 당사는 특약을 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 (이하 「구성자」라고 말합니다.) 의 수배여행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절의 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단체·그룹에 관계되는 여행 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 22 조 제 1 항의 업무는 당해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실시합니다.

-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을 당사에 제출하고 또는 인원수를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실제로 책임을 지고 또는 앞으로 책임 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후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 20 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있어서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수배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경우가 있습니다.

-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서 수배여행 계약은 당사가 당해서면을 교부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성자의 변경)

제 21 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서 구성자의 변경의 제안이 있었을 때는 가능한 한 이것에 응합니다.

- 2 전항의 변경에 의해 생기게 되는 여행 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당해변경에 요하는 비용은 구성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첨승 서비스)

제 22 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서의 요구에 의해 단체·그룹에 여행사 안내원을 동행시켜 첨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가 있습니다.

- 2 여행사 안내원이 행하는 첨승 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으로서 미리 정해진 여행 일정상에 단체·그룹 행동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3 여행사 안내원이 침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원칙으로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4 당사가 침승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계약 책임자는 당사에 대하여 소정의 침승 서비스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6 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 23 조 당사는 수배여행 계약의 이행할 때 당사 또는 당사가 제 4 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배를 대행시킨 자 (이하 「수배대행자」라고 말합니다.)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 부터 기산해 2 년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 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화물에 생긴 제 1 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목의 규정에 관계 없이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14 일이내에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21 일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15 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로서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 24 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여행자는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고 여행자의 권리 의무 기타의 수배여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여행자는 여행 시작후에 있어서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했을 때는 여행지에 있어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당해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 7 장 영업 보증금 (여행업 협회의 보증 사원이 아닐 경우)

(영업 보증금)

제 25 조 당사와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생기게 된 채권에 관해 당사가 여행업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고 있는 영업 보증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 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명칭

②소재지

제 7 장 변제업무보증금 (여행업 협회의 보증 사원일 경우)

(변제 업무보증금)

제 25 조 당사는 사단 법인 여행업 협회(동경도 구 정 정목 번 호)의 보증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2 당사와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생기게 된 채권에 관해서 전항의 사단 법인여행업 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 업무보증금으로부터 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당사는 여행업법 제 22 조의 10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해 사단 법인여행업 협회에 변제 업무보증금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 7 조 제 1 항에 따른 영업 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의 부

(적용 범위)

제 1 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동시에 여행자의 불리가 안되는 범위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이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

제 2 조 당사가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는 당사와 모집형 기획 여행 계약,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 또는 수배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것 이외의 여행업자의 모집형 기획 여행에 대해서 당사가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로 합니다.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의 정의)

제 3 조 이 약관에서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이란 당사가 해외 출국 수속의 대행에 대한 여행 업무취급 요금 (이하 「해외 출국 수속 대행 요금」이라고 말합니다.) 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대행 업무」라고 말합니다.) 를 실시하는 것을 맡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①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의 취득에 관한 수속
- ② 출입국 수속 서류의 작성
- ③ 기타 전 각호에 관련되는 업무

(계약의 성립)

- 제 4 조** 당사와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 후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2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당사는 전 2 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않고 전화, 우편, 팩스 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한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의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 4 당사는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 날은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 5 당사는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의 성립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당해 해외출국 수속 대행계약에 의해 받아들인 대행 업무 (이하 「수탁 업무」라고 합니다.) 의 내용, 해외 출국수속 대행요금의 액수 그 수수의 방법, 당사의 책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6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고 전항의 서면의 교부를 대신해서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당해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기재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 7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의 사용에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파일 (다만 당해여행자의 용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목비의무)

제 5 조 당사는 수탁 업무를 행할 때 안 정보를 다른 곳에 흘러 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여행자의 의무)

- 제 6 조**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해외 출국 수속 대행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2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수탁 업무에 필요한 서류, 자료기타의 물건 (이하 「해외 출국 수속 서류등」이라고 합니다.) 을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3 당사가 수탁 업무를 실시할 때는 일본의 관공서, 재일 외국공관 기타 다른 사람에게 수수료 사증료 위탁료 기타의 요금 (이하 「사증료등」이라고 말합니다.) 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될 때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당해사증료등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4 수탁 업무를 행할 때 우송비, 교통비 기타의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당해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약의 해제)

- 제 7 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 ①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해외 출국 수속 서류등을 제출하지 않을 때.
 - ②당사가 여행자에게서 제출된 해외 출국 수속 서류등에 부족함이 있다고 인정했을 때.
 - ③여행자가 해외 출국 수속 대행 요금, 사증료등 또는 전조 제 4 항의 비용을 소정의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때.
 - ④제 3 조 제 1 호의 대행 업무를 맡았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당사의 귀책 사유에 따르지 않고 여권, 사증 또는 재입국 허가 (이하 「여권등」이라고 말합니다.) 를 취득할 수 없을 우려가 지극히 크다고 당사가 인정할 때.

3 전 2 항의 규정에 근거해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이미 지불한 사증료등 및 전조 제 4 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이미 행한 수탁 업무에 영향을 관한 해외 출국 수속 대행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사의 책임)

제 8 조 당사는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의 이행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6 개월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당사는 해외 출국 수속 대행 계약에 의해 실제로 여행자가 여권등을 취득할 수 있는 것 및 관계국에의 출입국이 허가받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의 귀책사유에 따르지 않고 여행자가 여권등의 취득이 할 수 없고 또는 관계국에의 출입국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행 상담 계약의 부

(적용 범위)

제 1 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여행 상담 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동시에 여행자에게 불리가 안되는 범위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이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여행 상담 계약의 정의)

제 2 조 이 약관에서 「여행 상담 계약」이란 당사가 상담에 대한 여행 업무취급 요금 (이하 「상담 요금」이라고 말합니다.) 을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① 여행자가 여행의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언
- ② 여행계획의 작성
- ③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견적
- ④ 여행지 및 운송·숙박 기관등에 관한 정보제공
- ⑤ 기타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계약의 성립)

제 3 조 당사와 여행 상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여행 상담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전 2 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않고 전화, 우편, 팩스 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한 여행 상담 계약의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 상담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당사는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 날 또는 여행자의 상담 내용이 공서양속에 위반하고 혹은 여행지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위반하는 우려가 있는 것일 때는 여행 상담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요금)

제 4 조 당사가 제 2 조에 열거한 업무를 행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 소정의 상담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사의 책임)

제 5 조 당사는 여행 상담 계약의 이행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6 개월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당사는 당사가 작성한 여행의 계획에 기재한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해서 실제로 수배가 가능한 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원등의 사유에 의해 운송·숙박 기관등과의 사이에서 당해기관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기타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해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